|  |  |  |
| --- | --- | --- |
| **미소형 기업의 정부성 기금 면제에** **관한 통지**재세[2014]122호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인민정부, 중앙선전부, 교육부, 수리부, 중국장애인연합회:미소형(小微)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하에 미소형 기업의 정부성 기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월 매출액 또는 영업액이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3만위안 포함) 납세의무자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분기 매출액 또는 영업액이 9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9만위안 포함) 납세의무자의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수리건설기금, 문화사업건설비를 면제한다.2. 공상등기등록일로부터 3년 기간 장애인 고용 비율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재직 임직원 수가 20명 이하(20명 포함)인 미소형 기업의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면제한다.3. 상기 정부성 기금 면제 후 관련부서의 법에 따른 직책 이행과 사업 발전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으로 처리한다.재정부국가세무총국2014년 12월 23일  |  | **关于对小微企业免征有关政府性****基金的通知**财税[2014]122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人民政府，中宣部、教育部、水利部、中国残联：　　为进一步加大对小微企业的扶持力度，经国务院批准，现将免征小微企业有关政府性基金问题通知如下：　　一、自2015年1月1日起至2017年12月31日，对按月纳税的月销售额或营业额不超过3万元（含3万元），以及按季纳税的季度销售额或营业额不超过9万元（含9万元）的缴纳义务人，免征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水利建设基金、文化事业建设费。　　二、自工商登记注册之日起3年内，对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在职职工总数20人以下（含20人）的小微企业，免征残疾人就业保障金。　　三、免征上述政府性基金后，有关部门依法履行职能和事业发展所需经费，由同级财政预算予以统筹安排。财政部国家税务总局　　2014年12月23日 |